

審 查 報 告 書

[2000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

2001.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2001. 6. 25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6. 27
- 라. 上程日字 : 2001. 7. 6

2. 2000歲入歲出決算

가. 歲入歲出決算 總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세 입(B) (B/A)	세 출(C) (C/A)	잉여금(D) (D/B)
합 계	222,789,489	222,975,031 (100.1%)	168,989,466 (75.9%)	53,985,565 (24.2%)
일반회계	190,727,845	191,947,538 (100.6%)	146,860,864 (77%)	45,086,674 (23.6%)
특별회계	32,061,644	31,027,493 (96.7%)	22,128,602 (69%)	8,898,891 (27.7%)

나. 歲入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B)	결손처분(D) (D/B)	미수납액(E) (E/B)
합 계	222,789,489	230,517,780 (103%)	222,975,031 (97%)	748,280 (0.3%)	7,542,748 (3%)
일반회계	190,727,845	197,998,807 (104%)	191,947,538 (97%)	748,280 (0.4%)	6,051,269 (3%)
특별회계	32,061,644	32,518,973 (101%)	31,027,493 (95%)	0	1,491,479 (4.6%)

다. 歲入缺損處分 및 未收納額

◎ 缺損處分額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합 계	748,280	719,914	0	28,305	0
일반회계	748,280	719,914	0	28,305	0
특별회계	0	0	0	0	0

◎ 未收納額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사 유 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및재산압류	기 타
합 계	6,794,465	278,695	23,828	1,301,171	3,899,186	1,291,585
일반회계	5,302,988	278,563	23,828	1,246,021	3,754,576	0
특별회계	1,491,477	132	0	55,150	144,610	1,291,585

라. 歲出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출액(C) (C/A)	이월액(D) (D/A)	불용액(E) (E/A)
합 계	222,789,489	172,941,344 (78%)	168,989,466 (76%)	38,128,527 (17%)	15,671,495 (7%)
일반회계	190,727,845	150,812,742 (79%)	146,860,864 (77%)	34,911,433 (18%)	8,955,548 (5%)
특별회계	32,061,644	22,128,602 (69%)	22,128,602 (69%)	3,217,094 (10%)	6,715,947 (21%)

마. 剩餘金 및 移越額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어금
합 계	53,985,565	22,781,250	3,951,878	10,735,399 (660,000)	1,178,012	15,339,026
일반회계	45,086,674	20,710,268	3,951,878	9,589,287 (660,000)	1,177,544	9,657,697
특별회계	8,898,891	2,070,982	0	1,146,112	468	5,681,329

바. 豫算移用, 轉用, 移替

◎ 예산 이용 : 없음.

◎ 예산 전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3	2,438,995	
일반회계	3	2,438,995	
특별회계	0	0	

◎ 예산 이체 : 없음.

사. 繼續費 執行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이월액 (E=C-D)	불용액
계	13,449,800	3,484,768	16,934,568	6,685,281	10,249,287	
종합운동장및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7,261,800	3,484,768	10,746,568	6,681,981	4,064,587	
소각시설 설치사업	3,900,000	0	3,900,000	3,300	3,896,700	
오염하천 정화사업	2,113,000	0	2,113,000	0	2,113,000	
음암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175,000	0	175,000	0	175,000	

特別會計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집행잔액 (E=C-D)	다음연도이월액 (F)	불용액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	920,000	355,300	1,275,300	129,188	1,146,112	1,146,112	

아. 債務負擔 行爲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사업명	채무부담행위액 승인(일자)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 조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4 건		220,069			220,069
수리시설복구사업 (방조제)	2000.12.22	106,123	2001년도 국비지원 일시상환	국비보조금 미확보	106,123
석담천수해복구공사	"	9,780	"	"	9,780
원천천수해복구공사	"	98,306	"	"	98,306
어은천수해복구공사	"	5,860	"	"	5,860

特別會計 : 없음.

3. 基金 運用

(단위 : 천원)

종 류 별	'99년말 현재액	2000년 증 감 액			2000년말 현재액
		수납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627,387	1,422,620	132,743	1,289,877	2,917,264
재해대책기금	288,231	262,705	30,000	232,705	520,936
재난관리기금	82,128	57,197	-	57,197	139,32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23,256	52,155	17,700	34,455	357,711
노인복지기금	668,878	158,980	8,460	150,520	819,398
생활보호기금	4,894	-	-	-	4,89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60,000	87,663	27,663	60,000	320,000
경제살리기특별기금	0	803,920	48,920	755,000	755,000
여성발전복지기금	0	0	0	0	0
환경보전기금	0	0	0	0	0

4. 債權 및 債務

가. 債 權

(단위 : 천원)

구 분	'99년말현재액	2000년도 발생액	2000년도 소멸액	2000년말 현재액	
합 계	4,839,138	1,042,192	798,770	5,082,560	
일 반 회 계	145,000	47,000	60,000	132,000	
특별회계	소 계	4,694,138	995,192	738,770	4,950,560
	새마을	540,000	420,000	251,700	708,300
	영세민	796,846	70,094	0	866,940
	모자복지	182,550	66,691	11,081	238,160
	주택	2,349,103	21,852	272,146	2,098,809
	농촌	823,747	414,625	203,376	1,034,996
	의료보호	1,892	1,930	467	3,355

나. 債 務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말현재액	2000년 발생액	2000년 소멸액	2000년말 현재액	
합 계	43,985,696	1,693,069	12,301,442	33,386,290	
일 반 회 계	9,925,077	220,069	3,051,392	7,098,551	
특별회계	소 계	34,060,619	1,473,000	9,250,050	26,287,739
	공 기 업	21,812,765	0	2,708,799	19,103,966
	주 택	1,665,294	0	675,473	967,386
	수 석 농 공	6,012,856	0	2,180,856	3,832,000
	성 연 농 공	3,979,045	1,473,000	3,378,277	2,100,373
	고 복 농 공	590,659	0	306,645	284,014

5. 公有財産增減 및 現在額

(단위 : 천원)

구 분	'99년말 현재액	2000년 증감액			2000년말 현재액
		취 득	매 각	증 감	
합 계	363,038,053	15,797,370	947,041	14,850,329	377,888,382
행정 재산	139,647,774	9,948,970	0	9,948,970	149,596,744
보존 재산	183,471,001	0	0	0	183,471,001
잡종 재산	39,919,278	5,848,400	947,041	4,901,359	44,820,637

6. 物品增減 및 現在額

(금액: 천원, 수량 : 개)

구 분	'99년말 보유현황	2000 증감 실적		2000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037	90	43	1,084
금 액	3,503,581	549,236	216,001	3,836,816

7. 少數意見 : 없었음

8.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議案番號	第 20 號
議決年月日	2001. 7. . (第 回)

2000歲入歲出決算承認の件

提出者	瑞山市長
提出年月日	2001. 6. 27.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6.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업무에 반영·개선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골자

- '2000회계년도 결산현황(별첨)

첨부서류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순 서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2
- 결 산 검 사 개 요 ----- 3
- 2000 세 입 · 세 출 결 산 현 황 ----- 4
- 2000 결 산 검 사 결 과 분 석 ----- 5
- 검 사 결 과 지 적 사 항 ----- 13
- 검 사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보 고 서 ----- 37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산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산시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00회계연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3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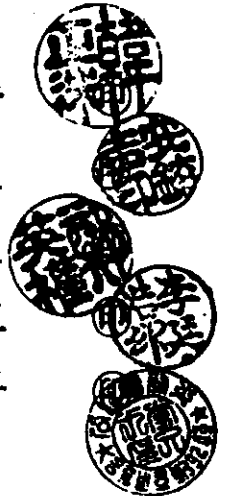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3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별첨 지적사항(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2001년 5월 일

서산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서산시의회의원	한	정	수
위 원		안	현	길
위 원		정	영	권
위 원		이	정	호
위 원		이	윤	구



결 산 검 사 개 요

2000회계년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2000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 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본 결산검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중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었습니다만, 상기 내용외에 시정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로 후술하였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잉여금(D) (B-C)
총계		222,789,489	222,975,031 (100.1)	168,989,466 (75.9)	53,985,565 (24.2)
일반회계		190,727,845	191,947,538 (100.6)	146,860,864 (77.0)	45,086,674 (23.6)
특별회계	소계	32,061,644	31,027,493 (96.7)	22,128,602 (69.0)	8,898,891 (27.7)
	상수도사업	10,276,581	10,083,383 (98.1)	6,777,996 (66.0)	3,305,387 (32.1)
	하수도사업	2,059,165	2,443,127 (118.6)	1,266,222 (61.5)	1,176,905 (57.2)
	주택사업	1,272,396	1,241,358 (97.6)	980,753 (77.1)	260,605 (20.5)
	공영개발	141,500	141,440 (100.0)	-	141,440 (100.0)
	구획정리	4,332,621	4,077,044 (94.1)	1,697,134 (39.2)	2,379,910 (54.9)
	주차장사업	935,692	1,029,676 (110.0)	155,967 (16.7)	873,709 (93.4)
	새마을소득	596,603	601,626 (100.8)	426,728 (71.5)	174,898 (29.3)
	의료보호	3,977,044	3,974,851 (99.9)	3,970,933 (99.8)	3,918 (0.1)
	영새민생활안정	131,300	155,392 (118.3)	78,000 (59.4)	77,392 (58.9)
	모자복지기금	144,342	167,665 (116.1)	60,000 (41.6)	107,665 (74.5)
	수석농공단지	3,014,092	2,225,710 (73.8)	2,184,840 (72.5)	40,870 (1.4)
	고북농공단지	610,926	337,317 (55.2)	314,582 (51.5)	22,735 (3.7)
	성연농공단지	4,083,105	4,076,890 (99.8)	4,029,492 (98.7)	47,398 (1.2)
	농촌발전	486,277	472,014 (97.1)	185,955 (38.2)	286,059 (58.8)

2000 결산 결과 분석

□ 총 관

(단위 : 천원, %)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잉여금(D) (B-C)
			세입(B) (B/A)	세출(C) (C/A)	
총계		222,789,489	222,975,031 (100.1)	168,989,466 (75.9)	53,985,565 (24.1)
일반회계		190,727,845	191,947,538 (100.6)	146,860,864 (77.0)	45,086,674 (23.6)
특별회계		32,061,644	31,027,493 (96.7)	22,128,602 (69.0)	8,898,891 (27.7)

○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 222,789,489천원으로서

- 총 예산현액의 100.1%인 222,975,240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의 75.9%인 168,989,466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세입액의 24.1%인 53,985,56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음.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경우 190,727,845천원의 예산현액중 191,947,538천원이 수납
되어 146,860,864천원을 지출하고, 45,086,67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32,061,644천원의 예산현액중 31,027,493천원이
수납되어 22,128,602천원을 지출하고 8,898,89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됨
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99회계년도 결산시보다 잉여금이
증가하였음.

□ 세입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결정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A)	미수납액(D) (B-C)	결손처분	이월액
총계	222,789,489	230,517,780	222,975,031	7,542,748	748,280	6,794,467
일반회계	190,727,845	197,998,807	191,947,538	6,051,269	748,280	5,302,988
특별회계	32,061,644	32,518,973	31,027,493	1,491,479	0	1,491,479

-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0,727,845천원보다 7,270,962천원을 초과한 197,998,80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91,947,53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051,269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748,280천원을 결손처분하고, 5,302,988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2,061,644천원보다 457,329천원을 초과한 32,518,97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1,027,4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491,479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 출 액(C) (C/A)	이 월 액(D) (D/A)	불 용 액(E) (E/A)
총 계	222,789,489	172,941,344	168,989,466	38,128,527	15,671,495
일반회계	190,727,845	150,812,742	146,860,864	34,911,433	8,955,548
특별회계	32,061,644	22,128,602	22,128,602	3,217,094	6,715,947

- 일반회계 예산현액중 150,812,74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46,860,86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4,911,433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20,710,268천원, 사고이월 3,951,878천원,
 계속비 10,249,287천원이며, 나머지 8,955,54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중 22,128,60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128,60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217,094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2,070,982천원, 계속비 1,146,112천원이며,
 나머지 6,715,94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이월액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총 계	38,128,527	22,781,250	3,951,878	11,395,399
일 반 회 계	34,911,433	20,710,268	3,951,878	10,249,287
특 별 회 계	3,217,094	2,070,982	0	1,146,112

○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38,128,527천원임.

- 일반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동별관 근거리 통신망 설치외 90건에 20,710,268천원, 사고이월은 서산문화원 신축외 29건에 3,951,878천원, 계속비 이월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및 종합운동장 건립외 3건에 10,249,287천원으로 총 34,911,433천원이 이월되었음.
- 특별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70,982천원, 계속비이월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1,146,112천원으로 총 3,217,094천원이 이월되었음.

□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22,975,032	191,947,538	31,027,494
지	방 세	30,677,763	30,677,763	0
세외수입	소 계	72,504,682	47,807,527	24,697,155
	경상적세외수입	13,025,127	6,755,928	6,269,199
	임시적세외수입	59,479,555	41,051,599	18,427,956
지	방 교 부 세	55,117,000	55,117,000	0
지	방 양 여 금	15,318,745	15,318,745	0
조	정 교 부 금	5,566,284	5,566,284	0
보조금	소 계	42,317,558	37,460,219	4,857,339
	국 고 보조금	28,873,739	25,172,882	3,700,857
	시·도비보조금	13,443,819	12,287,337	1,156,482
지	방 채	1,473,000	0	1,473,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68,989,466	146,860,864	22,128,602
인	건 비	21,114,200	20,312,736	801,464
물	건 비	19,999,520	18,415,205	1,584,315
이	전 경 비	28,982,582	23,111,564	5,871,018
자	본 지 출	80,652,492	76,953,380	3,699,112
용	자 및 출 자	915,500	0	915,500
보	존 재 원	8,374,958	921,485	7,453,473
내	부 거 래	7,554,436	5,804,436	1,750,000
에	비 비 및 기타	1,395,778	1,342,058	53,720

□ 세입금 불납 결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계	748,280	719,914	61	28,305	0
일반회계	748,280	719,914	61	28,305	0
특별회계	0	0	0	0	0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계	6,794,465	278,695	23,828	1,301,171	3,899,186	1,291,585
일반회계	5,302,988	278,563	23,828	1,246,021	3,754,576	0
특별회계	1,491,477	132	0	55,150	144,610	1,291,585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말 현재액	'2000년도 발생액	'2000년도 소멸액	'2000년말 현재액
합	계	4,839,138	1,042,192	798,770	5,082,560
일	반 회 계	145,000	47,000	60,000	132,000
특 별 회 계	소 계	4,694,138	995,192	738,770	4,950,560
	새 마을	540,000	420,000	251,700	708,300
	영 세 민	796,846	70,094	0	866,940
	모 자 복 지	182,550	66,691	11,081	238,160
	주 택	2,349,103	21,852	272,146	2,098,809
	농 촌	823,747	414,625	203,376	1,034,996
	의 료 보 호	1,892	1,930	467	3,355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말 현재액	2000년도 발생액	2000년도 소멸액	2000년말 현재액
합	계	43,985,696	1,693,069	12,301,442	33,386,290
일	반 회 계	9,925,077	220,069	3,051,392	7,098,551
특 별 회 계	소 계	34,060,619	1,473,000	9,250,050	26,287,739
	공 기 업	21,812,765	0	2,708,799	19,103,966
	주 택	1,665,294	0	675,473	967,386
	수 석 농 공	6,012,856	0	2,180,856	3,832,000
	성 연 농 공	3,979,045	1,473,000	3,378,277	2,100,373
	고 북 농 공	590,659	0	306,645	284,014

□ 수지 및 재정력

구 분	현 년 도 (천원)	전 년 도 (천원)	증 감 (천원)	구 분	현 년 도	전 년 도
세입총액	191,947,538	197,971,890	△6,024,352	자립도	40.89%	30.68%
세출총액	146,860,864	160,991,648	△14,130,784	재정력 지 수	39.95%	39.33%
차인잔액	45,086,674	36,980,242	8,106,432	경상수지 비 율	41.85%	43.83%
조상총용 총 당 금				세입세출 총당비율	93.44%	102.99%
잉영금사용 채무상환액				지 방 채 상환비율	9.67%	9.62%
실질수지	45,086,674	36,980,242	8,106,432	재정계획 운영비율	94.48%	101.53%
1 인 당 재정규모	977	1,066	△89	세입예산 반영비율	99.80%	100.17%
1 인 당 세부담액	1,277	1,311	△34	투 자 비 비 율	76.03%	70.03%
채무원재액 (원금)	5,556,204	7,957,620	△2,401,416	자체수입 증 감 율	90.11%	105.38%
적립금총액	402,254	439,835	△37,581	경상경비 증 감 율	98.20%	94.81%

검사결과지적사항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계상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 수 율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514,000	3,174,833	245,636	2,929,197	47.8%	7.8%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일반회계 세입중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계상되어 지적한바 있으나, 2000회계년도에도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인 3,174,833천원의 16.1%인 514,000천원을 계상함으로서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되었으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47.8%, 징수결정액 대비 7.8%로 징수율이 저조함.

○ 조치의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수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많은 미수납액은 징수 대책등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령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9,942,342	48,764,330	1,178,012	
국비보조금	32,864,098	32,057,734	806,364	
도비보조금	17,078,244	16,706,596	371,648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서 받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반환금 및 사용잔액을 반환처리해야 함에도 국비 806,364천원, 도비 371,648천원등의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사업의 5건은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였음.

○ 조치의견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확보된 국도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반환금 과다 발생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생활보호대상자 생 계 보 호	5,531,494	4,425,196	553,149	553,149	5,187,905	4,150,324	518,790	518,791	343,589	274,872	34,359	34,358
경 로 연 금	1,644,659	1,151,261		493,398	1,511,350	1,057,945		453,405	133,309	93,316		39,993
보육시설 운영	1,616,627	871,613	372,507	372,507	1,522,582	819,667	351,458	351,457	94,046	51,946	21,050	21,050
농수산물 규격 출 하 사 업	246,657	246,657			217,794	217,794			28,863	28,863		
예방접종시술비	24,000	13,290	5,355	5,355					24,000	13,290	5,355	5,355
고 용 촉 진 훈 련 사 업	117,505	94,005	11,750	11,750	42,903	34,321	4,291	4,291	74,602	59,684	7,459	7,459

3. 농촌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작성 미흡

○ 현 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27,277,000	227,277,110	227,277,100	0	

순세계잉여금의 정수결정액 227,277,110원, 실제수납액 227,277,100원인데 미수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음.

○ 조치의견

결산액 산정중 원단위 반올림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으로 사료되나 순세계 잉여금 실제수납액을 227,277,100원에서 227,277,110원으로 정정해야하며 향후 항목별 사항을 기재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소홀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액	132,760	
실 제 순 세 계 잉 여 금	142,319	
차 액	9,559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액을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방치되어 있어 9,559천원의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었음.

○ 조치의견

전년도 결산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5.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재출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실 제 지 급 현 황		자 료 상 지 급 현 황	
	구 분	지 급 액	구 분	지 급 액
13,000	임의보조	13,000	정액보조	12,000

2000년도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당초 예산액 13,000천원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위와 같이 결산자료에는 정액보조단체로 12,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재출하여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결산자료 재출하였음.

○ 조치의견

중요도를 떠나 모든 자료는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확인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 재출하여야 할 것임.

6. 도민체전 출전비 정산 미흡

○ 현 황

《결산현황》

(단위 : 원)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160,000,000	159,159,980	840,020	시보조 15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수입내역》

(단위 : 원)

예 산 액	수 입 액	비 고
169,500,000	163,640,000	

수입액 163,640,000원에서 지출액 159,159,980원을 제외하면 4,480,020원이 잔액으로 결산하여야 하는데 840,020원으로 결산처리하였음.

○ 조치의견

결산잔액에 누락된 3,640,000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체육회 결산에 포함되어 문제는 없으나 계수상 불일치한 점등을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사항임.

7. 2000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 미흡

○ 현 황

(단위 : 천원)

대 상 자		세 부 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주 소	성 명				계	시 비	자 담
성 왕 한 우 영농조합법인	가재호	숫송아지 입식	7호	80두	111,500	80,000	31,500

2000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한우고기의 고급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한우 사육농가 육성으로 고급 한우육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전두수 거세와 자급사료 확보등 생산비 절감으로 저비용 생산체계를 확보하는데 있는 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축산 제반 시설인 축사, 입식, 체질개선, 특수조사료등으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한우 숫송아지 입식 사업을 한 것은 근시적 행정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에 적절하지 못함.

○ 조치의견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 현 황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중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0,547,739,3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127,415,910원이 맞는 것으로 차액 420,323,470원이 발생하였음.

또한, 실제수납액에서도 10,096,592,2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083,383,210원이 맞는 것으로 차액 13,209,080원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하여 미수액이 44,032,700원이 되어야 하는데 451,147,090원으로 되어 있어 결산서상에 407,114,390원의 금액이 더 계상되었음.

○ 조치의견

확정된 결산내용이 아니고 결산검사중 발견된 사항으로 결산서를 수정하면 결산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산서 작성시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임.

9. 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불 용 액	집행사유미발생	비 고
합 계	222,789,489	16,784,944	771,427	
일반회계	190,727,845	8,955,548	175,408	
특별회계	32,061,644	7,829,396	596,019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그리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효율적 예산운명을 위하여 타당성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긴축 운영해야 함.

그런데도 각 실과 공통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적기 사업 추진 지연 및 과다 예산편성으로 예산현액 222,789,489천원중 불용액 16,784,944천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획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외 72건은 10,000천원 이상이 불용처리됨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사실이 있음.

○ 조치의견

효율적인 예산운명을 위하여 타당성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천만원 이상(전액불용포함) 불용처리내역

(단위 : 원)

구분	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기획감사관리	여비	72,273,000	57,213,790	15,059,210
		배상금등	8,000,000	0	8,000,000
		인건비	8,132,528,000	8,012,385,340	120,142,660
		복리후생비	2,346,192,000	2,303,680,860	42,511,140
		일반보상금	140,000	0	140,000
		민간이전	283,000,000	194,500,000	88,500,000
일	자치행정	인건비	1,116,866,000	1,106,157,530	10,708,470
		일반운영비	645,214,000	502,674,310	142,539,690
		업무추진비	383,834,000	345,311,540	38,522,460
		일반보상금	110,791,000	88,562,000	22,228,940
		민간이전	277,000,000	152,178,900	124,821,100
		자산취득비	130,600,000	112,421,000	18,179,000
반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148,116,000	129,790,080	18,325,920
		일반보상금	70,000,000	27,901,600	42,098,400
		자산취득비	51,000,000	37,222,600	13,777,400
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400,483,000	365,193,000	35,289,300
		시설비및부대비	2,508,368,000	2,332,815,240	18,602,760
		채무부담행위상환	1,500,000,000	1,433,064,430	66,935,570
회	종합민원	자산취득비	15,600,000	1,918,000	13,682,000
		연구개발비	180,000,000	40,000,000	140,000,000
		시설및부대비	2,289,106,000	1,675,451,610	187,940,390
회	문화회관관리	일반운영비	117,473,000	98,196,680	19,276,320
		인건비	345,589,000	331,194,130	14,394,870
		시립도서관운영			
계	보건환경	인건비	1,889,111,000	1,872,488,490	16,622,510
		여비	151,416,000	139,376,130	12,039,870
		업무추진비	199,620,000	187,631,000	11,989,000
		민간이전	213,981,000	192,119,470	21,861,530
		시설비및부대비	55,700,000	43,594,970	12,105,030
회	환경관리	인건비	290,307,000	265,436,260	24,870,740
		일반운영비	598,836,000	522,496,940	76,339,060
		시설비및부대비	10,882,158,000	4,455,276,920	202,678,080
회	상하수관리	인건비	85,046,000	74,396,750	10,649,250
		시설비및부대비	7,473,828,000	2,732,917,620	405,960,380

(단위 : 원)

구분	과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일	사회복지관리	일반보상금	6,317,072,000	5,828,729,510	488,342,490
		민간이전	81,000,000	70,420,000	10,580,000
		이주및재해보상금	113,383,000	86,561,940	30,121,060
	가정복지관리	일반보상금	3,525,016,000	3,359,190,440	165,825,56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233,287,000	210,694,760	22,592,240
		연구개발비	10,000,000	0	10,000,000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7,693,858,000	12,178,758,640	201,129,360
		민간자본이전	148,983,000	136,833,000	12,150,000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159,428,000	129,508,710	29,919,290
	지역개발	시설비및부대비	5,969,664,000	5,308,886,100	518,473,900
	산업관리	일반운영비	69,396,000	56,703,940	12,692,060
		민간본이전	2,783,822,000	2,701,618,820	37,203,180
	농업기반조성	시설및부대비	14,847,026,000	12,754,545,410	347,759,590
	축산관리	일반보상금	164,100,000	103,385,000	45,715,000
		사무관리	복리후생비	238,886,000	225,385,950
	농촌지도	일반보상금	27,700,000	15,215,300	12,484,700
		재료비	90,172,000	65,287,110	24,884,890
	회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88,541,000	75,024,250
일반보상금			346,825,000	153,645,160	178,179,840
시설비및부대비			543,198,000	369,121,750	97,076,250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32,122,000	15,244,930	16,877,070	
	일반보상금	119,609,000	70,867,590	48,741,410	
	재료비	27,929,000	16,931,550	10,997,450	
	재료비	86,100,000	71,108,680	14,991,320	
공원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45,000,000	210,189,440	34,810,560	
	연구개발비	50,000,000	26,988,500	27,511,500	
건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6,072,582,000	3,359,716,470	18,211,530	
도로건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0,771,528,000	8,506,020,520	157,312,480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139,587,000	115,457,680	24,129,320	
	일반보상금	42,472,000	18,688,290	23,783,710	
	시설비및부대비	610,237,000	544,261,670	65,975,330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143,567,000	110,143,640	33,423,360	
예비비	반환금및기타	2,006,470,000	1,342,058,430	664,411,570	

(단위 : 원)

구분	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특별회계	하수도	예비비	731,163,000	0	731,163,000
	주택	반환금 및 기타	55,500,000	29,290,000	26,210,000
		예비비	256,624,000	0	256,624,000
	공영개발	예비비	141,500,000	0	141,500,000
	구획정리	시설비및부대비	2,567,874,000	1,683,672,250	884,201,750
		예비비	1,746,084,000	0	1,746,084,000
	주차장	예비비	745,915,000	0	745,915,000
		반환금 및 기타	40,000,000	17,163,520	22,836,480
	새마을	응자금	580,000,000	420,000,000	160,000,000
	영세민	응자금	131,300,000	78,000,000	53,300,000
	모자복지	응자금	144,342,000	60,000,000	84,342,000
	수석농공	예비비	774,815,000	0	774,815,000
반환금 및 기타		50,000,000	0	50,000,000	
고북농공		반환금 및 기타	50,000,000	0	50,000,000
		예비비	242,189,000	0	242,189,000
성연농공		반환금 및 기타	50,000,000	0	50,000,000
농촌발전	응자금	483,377,000	185,000,000	298,377,000	

10. 농촌발전특별회계 과다 미집행 사유 발생

○ 현 황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및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대상자에 융자하여야 하며, 특히 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자금의 운영은 공정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그런데도 2000회계연도에 기정예산 256,100천원과 재1회 추경에 227,277천원을 반영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사업비 483,377천원중 298,377천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시켰음.

○ 조치의견

과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포기하였겠지만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반영 못한 것은 계획성없는 기금 운영이라 볼수 있으므로 효율성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11. 과오납 발생액중 미반환액 처리 미흡

○ 현 황

과오납의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없이 과오납 발생금액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반환된 과오납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수납 총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또한, 과오납 확정금액중 미반환 금액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조치의견

예산회계는 매년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오납 발생금액중 미반환 금액은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오납 확정금액중 미반환금액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과오납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회계처리프로그램의 정확성 여부 검토 필요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결 산 서 상	31,239,552,170	
회계처리프로그램	31,239,436,170	
차 이	116,000	

2000년 지방세수납 총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금액과 회계처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간에 116,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조치의견

회계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중대한 오류로서 간주됨.

따라서 회계처리 과정의 오류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그램 검토가 요구됨.

13. 미수납액 관리 미흡

○ 현 황

2000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금액 748,000천원중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663,000천원으로 총 결산처분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999년도 세입금 미수납금 사유별 현황표상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 38,000천원임을 고려할때 채권 관리소홀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수납액의 정확한 규모와 당해 미수납액별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지방세 및 기타 부과금의 고지단계에서 수납단계에 이르는 세입의 전과정을 일원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미수납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미수납액 발생시 그 발생원인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부당한 세출예산의 전용

○ 현 황

세출예산의 전용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항간의 전용금액 2,303,000천원 및 목간의 전용금액 7,250,000천원등 총 9,553,000천원의 세출예산 전용금액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특정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세출전용금액중 세항 건설관리(3321)에서 세항 하천관리(3322)로 전용한 금액 2,303,000천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세출예산 전용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규정에 합당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구분 불합리

○ 현 황

서산시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당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607,000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지출에 있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치의견

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활동단위를 정의한 후 당해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임.

따라서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특별회계는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설치조례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당해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치조례 및 회계 처리 기준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부실

○ 현 황

지방세 부과업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사자료(양도자의 취득가액 확인 가능)는 취득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많은데도 관계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에 소극적이었으며

부과처분이 지연되어 조세 채권의 확보(압류등)가 안된 채 결손한 사례와 (예: '95년 1월 취득, '95년 5월 부과, '95년 7월 소유권 이전, 2000년 결손) 법인의 취득자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 (예: 광업권의 취득가액이 1만원, 50만원으로 매우 소액으로 신고한데 대한 조사실적 없음.)

지방세 징수업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납부기일 또는 독촉기일로부터 5년 경과후 소멸시효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추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여부등을 검토할 여지가 없게 됨.

소액채납액을 납기 5년 경과후 무더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사례등은 징수의지가 부족하고 징수행정의 허점을 노출시켰으며 무재산 결손처분시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없이 결손처분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 조사가 가능함. 따라서 도 본청 단위에서 고액채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출력 하달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일선 기관에서 일일이 금융 조회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됨.

압류 절차 미숙, 동일한 기관장의 명의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채납액이 발생할 때마다 중복하여 압류를 촉탁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재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압류시에는 동 압류의 사유가 되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추후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효력이 미침.

○ 조치의견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는 주민들의 납세의식과 징수권자의 공권력 행사가 상호 맞물려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도 공평, 신속하게 과세하여야 하겠지만 징수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평한 과세행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징수권을 유보 내지 포기(결손처분 등)할 때에도 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조세 채권을 일실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7. 특별회계 처리방법등 개선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의 관리 개선

시의 기금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의 운용권한 및 귀속주체는 충남도에 있기 때문에 당해 기금은 시의 기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은 시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명세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다만 부수적으로 보다 많은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동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해대책기금의 회계처리 오류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총배정액중 미집행하여 반환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자수입 및 지출금액을 각각 과대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함. 따라서, 기배정된 금액중 미집행하여 반환된 금액을 차감한 실제집행 금액만을 기금운용명세서상 지출액으로 처리해야 함.

과년도수입에 대한 처리방법 오류

과년도 미수납액은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의료보호, 영세민, 모자복지)는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특별회계(주택, 주차장, 새마을,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 산정이나 계정과목의 기재에 오류를 범하고 있음. 결손처분하기 전의 과년도 미수납액(누적액)은 반드시 과년도수입의 항목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미수납액 누적액(예산편성연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재해야 할 것임.

18. 결산서 현황표등 작성 부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수정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 산 서 상	5,302,988	1,898,593
사유별현황표상	5,311,434	1,443,515
차 이	8,446	455,078

결산부속서류중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상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세입세출결산서상 미수납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의 차이 8,446천원은 연도말 현재 고지되었으나 납기일이 미도래된 개발부담금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음.

따라서, 미수납액은 납기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납기일이 미경과된 개발부담금은 미수납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특별회계의 차이 455,078천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7,116천원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7,962천원의 차이로 인한 것임.

그러나, 특별회계의 차이원인은 일반회계에서와 같은 항목별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작성자의 작성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는 결산서상 금액과 대조하여 그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임.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표 수정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공매후 지방세법 제30조 제 1호(채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채납액중 배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표”상의 “무재산”이 아닌 “공매시 무배당”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임.

-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수정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 산 서 상	31,040,702	8,912,101
사유별현황표상	31,037,702	8,909,101
차 이	3,000	3,000

결산부속서류중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상 특별회계의 세입란 및 잉여금란의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상의 당해 금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료를 검토결과 위의 차이는 모자복지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상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결산부속서류중 하나인 “2000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를 결산서에 따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지시 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계상	세 무 과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회여성복지과 농림과,지역경제과 보건소	
3	농촌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작성 미흡	농 립 과	
4	모자복지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소홀	사회여성복지과	
5	한국자유총연맹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적정	문화공보담당관실	
6	도민채전 출전비 정산미흡	문화공보담당관실	
7	2000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 미흡	축 산 해 양 과	
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상하수도사업소	
9	비용액 과다발생	각 실과, 사업소	
10	농촌발전특별회계 과다 미집행 사유 발생	농 립 과	

지시 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1	과오납 발생액중 미반환액 처리 미흡	세 무 과	
12	회계처리프로그램의 정확성 여부 검토 필요	세 무 과	
13	미수납액 관리 미흡	세 무 과	
14	부당한 세출예산의 전용	기획감사담당관실	
1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구분 불합리	상하수도사업소	
16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부실	세 무 과	
17	특별회계 처리방법등 개선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여성복지과	
18	결산서 현황표등 작성부실	세 무 과 사회여성복지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	일반회계 세입 예산 과소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현액 : 514,000천원 - 징수결정액 : 3,174,833천원 - 실제수납액 : 245,636천원 - 미 수납액 : 2,925,197천원 ○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징수 결정액에 비하여 과소계상 되었 으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47.8%, 징수결정액 대비 7.8%로 징수율이 저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강구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5개조 - 자동차번호판 영치 : 253건 - 부동산압류 : 279건 - 관허사업 제한조치 : 99건 - 봉급생 활자급여압류 : 19건 ○ 기타 다각적인 자진납세 유도 및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계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업무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급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예상 소요액 파악의 불확실성에 의한 보조금 잔액임. -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시 정확성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지원 대상자의 잦은 신분변동(전출입 및 소득액)으로 발생하였음. - 앞으로는 국도비 중간정산 및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반환금 및 사용잔액을 반환처리해야 함에도 반환금이 과다발생 하였음.	○ 재해 및 작황부진으로 수확량 감소 등에 따라 출하물량 감소와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일부작목반에서 사업포기 발생 - 8개작목반 [포장제 265,357메 보조금 28,863천원 - 타 작목반으로 변경지원하기 위하여 희망량을 파악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반납 처리 하게 되었음. -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농 립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서 받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반환금 및 사용잔액을 반환처리해야 함에도 국비 54,684천원, 도비 7,459천원 등의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였음.	○ 예산집행 반납액은 99년도 고용촉진 혼련 이월 사업비로 2002년도 2월까지 집행 후 정산하여 발생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117,305천원으로 혼련기관 7개소에 혼련생 7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잔액 74,602(국비 59,684 도비 7,459, 시비 7,45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다양한 혼련직종(컴퓨터의 9개종)이 지정 받도록 노력하여 관내 혼련기관 8개소 및 의무위탁기관 11개소에 혼련생 248명을 입소시켜 현재 156명이 혼련중에 있으며 2001년도 본예산 전액(190,009천원)이 집행될 계획이나 집행예산의 부족으로 1회추경 예산에 70,000천원을 계상하였음.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혼련에 내실을 기하여 많은 혼련대상자가 고용촉진 혼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지역경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2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예방접종시술비 예산액 24,000천원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 과다발생	○ 접종대상자의 축소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 ○ 차후 예산운영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보 건 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세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3	농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 작성미흡	○ 순세계 잉여금(이월금)의 징수 결정액 227,277,110원, 실제 수납액 227,277,100원인데 미 수납액이 0원으로 되어있음.	○ 세입결산액 조서 작성시 10원의 착오가 발생 하였으므로 정정하였음. - 착오금액 : 227,277,100원 - 정정금액 : 227,277,110원 ○ 향후 결산조서 작성기재에 철저를 기하겠음.	농 림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결과	조치 결과 여부
4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소홀	○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소홀	○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는 2000. 11월 조례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 으로 변경 되었음. -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시 여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결과	조치 결과 여부
5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적정	○ 2000년도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당초 예산액 13,000천원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으로 지급되었으나 결산자료에는 정액보조 단체로 12,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 자료 제출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문화공보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6	도민체전 출진비 정산미흡	<p>○ 도민체전 출진비 정산서에 수입액 163,640,000원에서 지출액 159,159,980원을 제외하면 4,480,020원이 잔액으로 결산하여야 하는데 840,020원으로 결산 처리하였음.</p> <p>누락된 3,640,000원은 시 체육회 결산에 포함되어 문제는 없으나 결산보고서 작성시 철저히 기할 사항임.</p>	○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시 철저를 기하겠음.	문화공보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여부	조치 결과
7	2000)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생산단지 조성 사업미흡	○ 2000)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한우고기의 고급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한우 사육 능가 육성으로 고급 한우육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전 두수 거세와 자급사료 확보등 생산비절감으로 저비용 생산체계를 확보하는데 있는 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함는 축산계반 시설인 축사, 입식, 체질개선, 특수조사료 등으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한우 숫송아지 입식사업을 한 것은 근시적 행정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에 적절하지 못함.	○ 2000)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성왕한 우법인)으로 가축입식(숫 송아지80두)뿐만 아 니라 축사신축(240평), 퇴비사(60평), 청예 사료작물 재배(4.2ha), 담리작 사료작물 재배 (3.9ha), 볏짚암모니아(2기), 기성 초지보완 (20ha) 사업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였 고 청예사료 및 담리작사료작물 재배등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지원, 득 려하였으며,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8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부적정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10,547,739,3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127,415,910원이 맞는 것으로 차액 420,323,470원이 발생하였음. ○ 또한 실제 수납액에서도 10,096,592,2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미수액이 44,032,700원이 되어야 하는데 451,147,090원으로 되어 있어 결산서상에 407,114,390원의 금액이 더 계상되었음.	○ 200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중 징수결정액이 기재금액과 실제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것과 실제 수납에서 미수액이 결산서 상에 더 계상된 것은 상수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 회계방식이 복잡하기로 되어 있고 매년 5월경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 결산감사중 가결산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결산수익은 조사 결정액을, 지출은 채무확정액을 결산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달리 당기회계(12월 말기준)로 은행에서 12월전에 수납은 하였으나, 공기업회계로 연도내 이체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공기업회계에서는 당해 연도회계로 수익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수익금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상수도 사업소	여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p>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발생 수익처리된 이체금액과 차기 이월 미지급금등은 회계처리되었으며, 2000회계 연도 결산을 공인회계사 세입세출 회계결산 검사로 결산액을 최종 확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결정액 : 10,127,415,910원 - 수 납 액 : 10,083,383,210원 - 미 수 액 : 44,032,700원 <p>○ 앞으로도 공기업에서 추구하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상하수도 사 업 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9	불용액 과다 발생	<p>○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그리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편성 재정운영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긴축운영해야됨.</p> <p>그런데도 각실과 공통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적기 사업추진 지연 및 과다 예산편성으로 예산현액 222,789,489천원중 불용액 16,784,944천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획감사관의 일반운영비의 72건은 10,000천원 이상이 불용처리 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사실이 있음.</p>	<p>○ 예산편성 내용상 집행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는 집행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집행잔액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편성시에는 삭감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p>기획감사 담당관실 (각 실과 사업소)</p>	<p>여</p>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0	농촌발전기금 특별회계 과다 미집행사유 발생	<p>○ 농촌발전특별회계자금은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안정성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대상자에 용자해에하며 특히 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자금의 운영은 공정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야함.</p> <p>그런데도 2000회계년동 기정에산 256,100천원과 제1회 추경에 227,277천원을 반영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사업비 483,377천원 중 298,377천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음.</p>	<p>○ 농촌발전특별회계 용자금을 본인들의 부득이한 사유 및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미집행된 것으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모두 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p>	농림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1	과오납 발생액증 미반환액 처리 미흡	<p>○ 과오납의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 없이 과오납 발생금액증 실재로 반환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반환 된 과오납의 발생년도에 관계 없이 수납총액에서 차감하고 있음.</p> <p>또한 과오납 호가정금액증 미 반환금액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 되지 않는 있는 실정임.</p>	<p>○ 발생되는 과오납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세출예산에 편성 지급토록 하겠으며 과오납 확정금액증 미반환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전액 반환되도록 하겠음.</p>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목 제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여부	조치 결과 여부
12	회계처리프로그램의 정확성 여부검토 필요	<p>○ 2000년 지방세 수납 총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서상의 금액과 회계처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간에 116,000원 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계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증대한 오류로 간주됨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입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검토가 요구됨.</p>	<p>○ 전국적인 지방세 프로그램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세 통일된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지난해 6월말 도스 체계에서 윈도우 체계로 전환 운영중 전환초기 신 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200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자동이체 수납분이 프로그램 오류를 일으켜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인 고려 티엠에스에서 수차례의 오류 수정작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시금고에서 이체된 금액과 프로그램상 수납된 금액인 116,000원의 차액의 원인을 찾는 데에는 실패 하였음. 그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통해 현재는 정확한 수납처리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전과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 조치하겠음.</p>	여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미수납액 관리 미흡	○ 2000년도 일반회계 미수 납액의 결손처분 금액 748,000천원중 무채산의 사유로 결손처분 금액이 663,000천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999년도 세입금 미수납금 사유별 현황포상 무채산으로인한 미수납액 38,000천원임을 고려할 때 채권관리 소홀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됨.	○ 지방세 체납자 카드화 관리 -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정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지방세 체납자 카드화 관리 프로그램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체납자의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등의 조치로 결손처분에 최소화를 기하겠음.	세 무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4	부당환세출예산의 전용	○ 세출예산의 전용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항간의 전용 금액 2,303,000천원 및 목간의 전용금액 7,250,000천원등 총 9,553,000천원의 세출 예산 전용금액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특정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세출전용금액 세항 건설관리(3321)에서 세항 하천 관리(3322)로 전용한 금액 2,303,000천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특정과목(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의 예산전용 금지조항은 → 3개 과목의 예산을 성질이 다른 과목으로 (예: 인건비→물품구입비)의 전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 3개 과목을 세항이나, 세세항의 타세항, 타세 세항의 동일과목(예: 인건비→인건비 시설비 →시설비)으로의 전용은 가능함.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해설(조세통람사발행) 454페이지 ○ 그러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적법한 과목설정과 추정예산편성을 통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구분 불합리	○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제3조에 의하면 당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607,000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지출에 있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수도법제21조에 의한 서산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산시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 기타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도로 되어 소규모 사업과 일상경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음암하수 종말처리장 시설비 5,607,000천원은 양여금,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회계간 전출시 예산 규모 증가로 일반회계 상하수 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의 상하수관리비와 하수도특별 회계의 예산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6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실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납부기일 또는 독촉 기일로부터 5년경과 후 소멸시효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추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채납처분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므로, 납기 5년 경과 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함.	○ 결손처분시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은 지방 세법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세 징수 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에 의거 처리하고 있음. 일부 소액채납액의 경우 소멸시효로 처리한 부분이 있으나, 추후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 및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세무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7	경제살리기 특별기금의 관리 개선	○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은 시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명세서에서 제외시켜야하며, 부수적으로 많은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동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경제살리기특별기금은 다음 결산시부터 기금명세 서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안정자금신청시 충남 신용보증조합의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지역경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세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7	채해대체크금의 회계처리오류	○ 채해대체크금의 경우 총 배정액중 미집행하여 반환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처리 함으로써 이자수입 및 지출금액을 각각 과대 계 상하는 오류 발생.	○ 앞으로는 기 배정된 금액중 미 집행으로 반환된 금액을 차감한 실제집행 금액을 기금운용명세서상 지출액으로 처리 하겠음.	민방위재난 관 리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7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처리방법 오류	○ 과년도 미수납액은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특별회계 (의료보호, 영세민, 모자 부지)는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의료보호, 영세민, 모자복지기금의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추후에는 여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8	결산서 현황표등 작성부실 -세입금 미수 납액 사유별 현황표 수정	○ 결산 부속서류중 일반회계의 차인액 8,446천원은 납기일이 미 도래된 개발부담금을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표”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나, 미 수납액은 납기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납기일이 미 경과된 개발부담금은 미 수납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납기일이 미 경과된 개발부담금 8,446천원은 미 수납액에서 제외 하겠음.	세무과	여
		○ 특별회계의 차인액 455,078천원은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표” 작성지의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표는 결산서상 금액과 대조하여 그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임.	○ 특별회계의 차인액 455,078천원은 작성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히 대조하여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8	결산서 현황표등 작성부실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표 수정	○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담보채산에 대한 공매후 지방세법제30조제1호(채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할때)에 해당하는 경우, 채납액중 배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표” 상에 무채산이 아닌 공매시 무채당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임.	○ 지방세 채납채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한후 채납액중 배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표에 무채산이 아닌 공매시 무채당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일부 현황표 기재과정에서 무채산으로 표기된 것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결손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시행 하겠음.	세 무 과	어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8	결산서 현황표등 작성부실	○ 결산부속서류중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상 특별회계의 세입 및 잉여금결산액이 결산서 상의 금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료검토결과 모자복지기금 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상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결산부속서류중 2000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를 결산서에 따라 수정해야함.	○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를 여성발전복지 기금으로 이관시 결산서상의 금액으로 기 이관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